

발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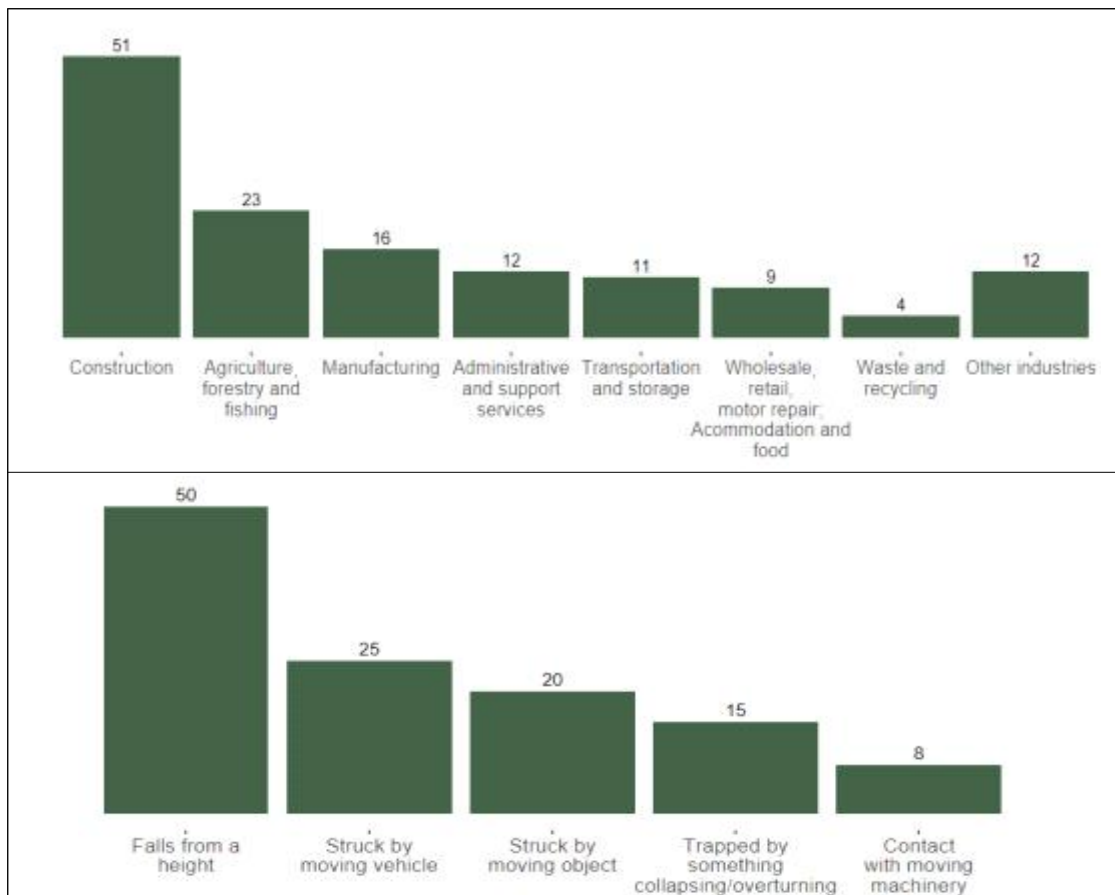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10만인 동의안’ 축조 해설 - 아직 이루지 못한 것

손익찬 변호사¹⁾

1. 중처법 제정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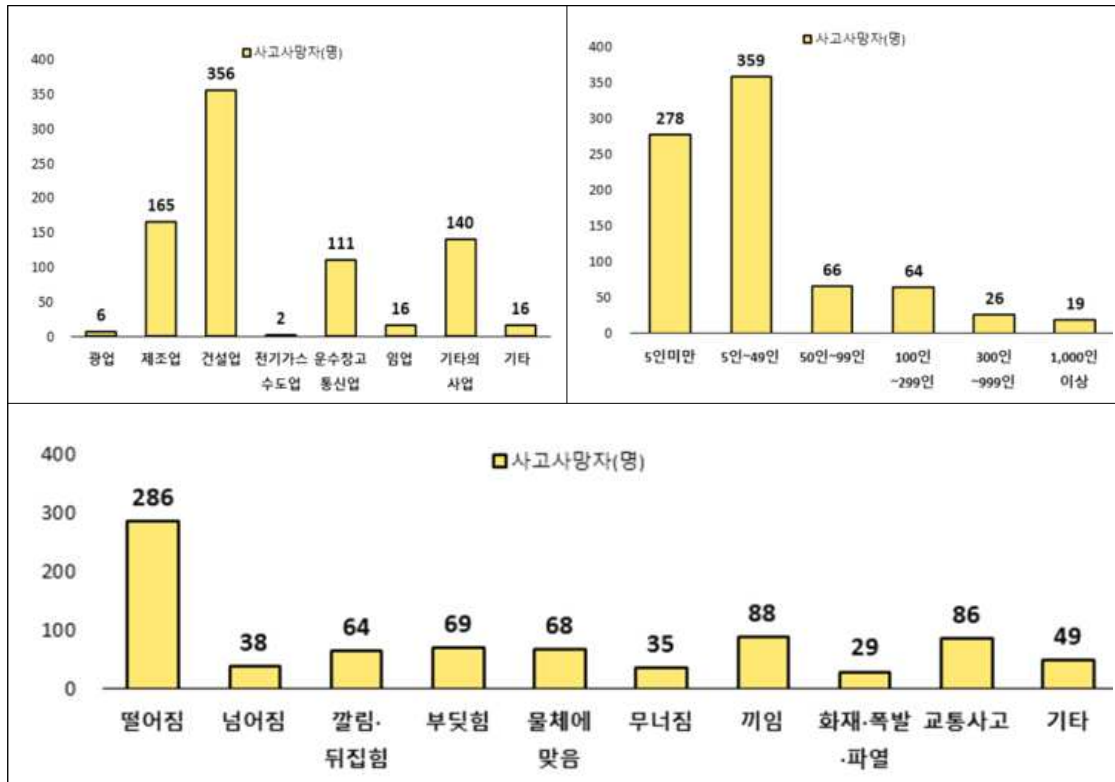
가. 산재 사고사망의 실태

- 산재사망은 ‘사고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나뉘는데 이하 ‘사고사망’에 초점을 둔다.
- 산재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연간 통계, 즉 ‘공무원 및 1차 산업’은 제외한 것이 주로 인용된다(제목 : 20XX년 12월말 산업재해현황).
- 영국 : 138명(2023/24 1년간)²⁾ - 영국은 1차산업도 포함 / 인구 6800만명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법률팀원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2) HSE, Work-related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2024), 1면 : “Date up to March 2024”

- 한국 : 812명(2023년, 전년 대비 62명(7.1%) 감소) / 인구 5100만명



나. 법 제정 운동 역사

- 주요 단체

- 1) ‘노동안전보건’ 단체 :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3) 노동/시민사회단체
- 4) 당사자(단체) : 산재피해유가족, 416연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등
- 5) 정 당

- 주요 사건

- 1)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 2006년부터 매년 ‘살인기업 선정식’ 개최 및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시작
- 2)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공약 (2007년)³⁾ :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6136?no=86136>

i) 반복·악질·고의적인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의 살인죄를 부과하는 '산업재해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 중대재해처벌법

ii)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비정규직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청 사업주의 포괄적인 안전보건 책임'을 부여할 것입니다." → 2019년 전부 개정 산안법(김용균법)⁴⁾

3) 2014년, 세월호참사 - '시민재해' 부각

4) 2010년대 중반 - 가슴기 살균제 사건 - '제조물 책임' 부각

5) 국회에서의 논의 개시

→ 1908721, 2013. 12. 24. 발의, 기업살인처벌법(김선동)

→ 2006761, 2017. 4. 14. 발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 대표발의) - 제정운동의 성과물

6) 산재피해 당사자 투쟁의 흐름

→ 반올림(2007년~), 구의역 김군(2016년), 故 이한빛(2016년), 故 김용균(2018년) 등

다. 제20대 국회 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 2020년 4~5월 '제정운동본부' 발족 : 제21대 국회 구성(연대체 → 운동본부)

≡ 20년 4월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38명 사망) ; 2008년 이천 코리아2000 냉동 창고 화재 참사(40명 사망)의 반복 - 국민적 공분

- 2020년 9월,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인 : 김미숙 어머니) 10만인 동의 달성⁵⁾

- 강은미(정의당), 박주민(민주당) 등 개별의원 발의 - 위 청원을 기초로 함

- 2020년 12월 집중투쟁 (단식)

12월 7일 2명 : 국회 정문- 이태의(공공운수노조), 김주환(대리운전노조)

12월 11일 4명 : 국회 본청 앞- 김미숙, 이용관(고 이한빛 PD 부친), 이상진(민주노총) 강은미의원 / 21년 1월 8일 법사위 통과일까지 29일 단식

12월 24일 집단 단식 : 국회 본청 앞 - 산재피해 유가족, 노동시민사회단체

- 21년 1월 28일 본회의 통과

4)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5) 근로기준법 5인미만 적용제외 규정 폐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과 함께 '전태일 3법'으로 묶임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과 후의 변화

- 법 제정 전⁶⁾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법인 제외)에게 징역·금고(집행유예 포함)형이 선고된 비율은 2020년 49.4%(445명 중 220명), 2021년 48.9%(278명 중 136명)로 절반 수준이었다. 징역·금고형의 평균 형량은 7개월 남짓에 불과했다. 분석대상 판결 중 기소된 723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불과 15명으로 전체의 2.1%에 지나지 않았다. 징역·금고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낸 평균 벌금액은 2020년 423여만원, 지난해 488만여원에 불과했다. 법인도 많은 벌금을 낸 것은 아니었다. 2020년 평균 515만여원, 2021년엔 599만여원에 그쳤다.

※ 단 산안법 위반은 ‘치사’죄와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위 통계는 두 가지가 합쳐진 것으로 보임

- 법 제정 후⁷⁾

한겨레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입수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10월) 18일까지 1심이 선고된 사건 판결문 27건을 보면, 실형 선고 사례는 단 4건 (14.8%)에 불과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0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 2건 (7.4%), 무죄 1건 등의 순이었다. 유죄가 인정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1억4346만원으로, 이례적으로 20억원이 선고된 삼강에스앤씨를 제외하면 6920만원으로 집계됐다.

※ 무죄 사례 : 행위 당시 50억(원) 미만 사업장이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이지 혐의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었음

※※ 최근 아리셀 화재참사와 영풍석포제련소 사건 2건의 경우 피고인 구속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임

※※※ 산안법과 달리 중처법의 경우 아직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음

6)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5571.html>

한겨레신문, 2020년 3월 21일, “‘산재 처벌 강화’ 산안법 개정·양형기준 강화에도…실형 2%”, 박태우 기자 -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심 판결문 496건(2020년 304건·2021년 192건) 대상 연구임

7)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63428.html>

한겨레신문, 2024년 10월 20일,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2년9개월동안 실형은 4건뿐”

- 기소 현황⁸⁾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5월 31일 기준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총 51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총 40곳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기소 현황을 보면 준비가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형사처벌 리스크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순위⁹⁾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순위				
*기간 : 2022.1.27~2024.3.30				
순위	원청명	중대재해 횟수	사망자수	하청노동자 사망자수
1	현대건설	8	8	7
2	디엘이앤씨	7	8	6
	대우건설	7	7	6
	롯데건설	7	7	5
5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6	6	5
6	한국전력공사	5	5	3
	산림청	5	5	3
8	중흥토건	4	4	3
	현대제철	4	4	2
	한화	4	4	2
	한국철도공사	4	4	0

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매일노동뉴스 재가공

- 사건

- 1)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것은 법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 2) 형량의 경우 양형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아래에서 살펴볼 양형결정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도 함께 고민해야 함
- 3) 판결을 통해서 예방을 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을 정비해서 ‘검거율’을 높임으로써 기소건수를 늘려야 함. 사법뿐만 아니라 예방적 ‘행정’도 중요함.

8) <https://www.anjuni.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49>

안전저널, 2024년 6월 17일,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약 80%가 ‘중소기업’”, 김보현 기자

9)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86>

매일노동뉴스, 2024년 9월 24일,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최다 살인기업은 현대건설”, 임세웅 기자

2. 축조해설

■ 의문 :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대왕이 아니라 ‘집현전 학자’들 아닌가?

정몽주를 죽인 것은 이방원이 아니라 ‘조영규’ 아닌가?

■ 들어가기에 앞서 : 중처법을 둘러싼 쟁점은 1) 적용 대상의 문제 2)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의 문제 3) 제재수단 등 그 밖의 문제로 구분

■ 비교 대상 : [별지 1] 3단 비교표

① 10만인 동의안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법률안 (청원번호 2100013, 청원기간 20. 8. 26. ~ 9. 22., 접수일 20. 9. 22.)

② 제정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③ 강은미 의원안(법 제정 이후 발의된 것, 의안번호 2114568, 제안일자 2022. 1. 26.) : ②에 담기지 못한 ①의 내용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취지

■ 본론 (이하 조문번호는 ‘10만인 동의안’에 따름)

○ 주제 1. 중대재해 정의 규정 (제2조 제1호) -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분화

- 10만인 동의안의 핵심 ‘기업’¹⁰⁾의 이윤추구 활동 때문에 노동자/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중대재해’는 제정법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쪼개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산재’를 우선시한 일부 집단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그 때문에 법안을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분리해서, ‘중대산업재해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일각의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 운동본부는 붕괴될 것이어서 그 제안은 거부되었다.

- 절충점으로, 현행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장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산업재해의 피해자는 ‘종사자’로, 시민재해의 피해자는 ‘시민’으로만 특정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는 영국/호주의 기업살인법을 보더라도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민재해는 ‘기인물(起因物)’을 positive한 방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서 처벌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10) 그러나 비영리단체(병원/학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도 중처법에 따른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당위성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굳이 ‘기업’으로 한정지를 이유는 없음.

- 그 결과, 산업재해가 원인이지만 그 기인물이 시민재해에서 정한 리스트에 들어가있지 않고, ‘시민’만 죽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아이파크 참사(9명 사망,모두 시민)는 비록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설령 시행되었더라도 이 법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 강은미 의원안은 이 허점을 막기 위해서 시민재해 부분에 제2조 제3호 중 다음을 추가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
- 그러나 문제의 근본은 산업재해/시민재해를 구분짓는 것에 있다. 산업재해 방지의무는 그 종사자만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건설, 화학 등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따른 해악도 커질 수 있으므로 종사자/시민을 모두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신분은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

○ 주제 2. 부상 (제2조 제1호 나목)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요양기간”을 인정해주고, 요양이 끝나면 “치유”되었다고 정한다.¹¹⁾ 따라서 “요양”은 익숙한 개념이다. 사망과 별도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한 이유는, 이 정도의 부상은 단지 운이 좋아서 사망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근거한다(1:29:300의 법칙).
- 참고로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제정법에서는 이 부분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으로 변경되었다. 첫째로, 한 명만 부상당한 것은 “중대”재해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1회적) 사고”라는 개념이 추가되었다. 둘째로, 3개월이 6개월로 늘어난 것도 “중대”재해여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로, “요양”이 “치료가 필요”로 바뀌면서 오히려 개념이 애매해졌다.
- 강은미 의원안은 아무런 의견이 없다.
- 제정법에는 다음의 허점이 있다 : 예를 들어 ‘절단(amputation)’의 경우 사고발생부터 봉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합까지 6개월 내에 모든 ‘치료’가 끝날 수 있다. 물론 이는 “요양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만약 동일한 사고로 2명의 신체부위 일부가 절단되더라도 중대산업재해는 아닐 수 있다. 2명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 주제 3. 질병 (제2조 제1호 다목)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정한다. 이는 1회적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누적적 노출로 인한 질병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10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중대재해라는 취지이다. 이는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중대재해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제정법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이 부분은 해설이 필요하다.
 - 1) 먼저, “동일한 유해요인”이란, 사고에서의 “동일한 사고”와 비견되는 개념이다. 1회적 사고는 아니더라도 같은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한 사업체 내에서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질병자가 3명이 발생해도 이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다. 애초에 형법은 결과가 아니라 의무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둘째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다. 이는 처벌범위를 ‘급성중독’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다시말해 질병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정신질환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뚜렷한 물리적·화학적 요인에 따른 “급성”“중독”으로서 대통령령에서 열거한 질병자만 중대재해로 보자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 3) 셋째로, 위와 같이 범위를 줄이는 대신에 10명을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으로, 처벌대상을 확대하자는 것도 고용노동부의 아이디어였다. 여기서 “1년 이내”라는 개념은 가) “동일한 원인”에 ‘비슷한 기간동안’ 노출되더라도 사람에 따라 질병이 발현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 나) 혹은 “동일한 원인”에 ‘다른 시기’에 노출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누적하여 발생한 환자가 3명에 이른다면 중대재해로 볼만하다는 것이다.
 - 4) “급성중독”과 “1년 이내”는 모순된다. “급성”“중독”만 놓고 보면 마치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경우만 규율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이내”까지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일시에’ 노출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 가), 나)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중요한 것은 우선 ‘의무위반’이 있었는지이고 그에 따른 결과는 1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발생해도 되는 것이다(결과적 가중범). 특히 “급성”과 “중독” 모두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짓기 어려운 개념이다.

시행령 별표를 보더라도 그다지 급성적으로 중독되지 않는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시행령 [별표 1]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얼마나 빨리 발생해야 급성중독일까? 애매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같은 별표 13.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우 폭넓게 정한다 :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참고로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최초의 중대산업재해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사건의 경우(창원지법, 1심 유죄) 디클로로메탄에 ‘몇 달 동안’ 노출되어 중독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무리없이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까지 이뤄졌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429호 판결).
- 강은미 의원안은 이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급성중독 등”을 삭제했다.

○ 주제 4. 중대시민재해의 기인물인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제2조 제2호, 제3호)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은 4가지 경우로, “공중교통수단”은 5가지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은 “라. 그 밖에 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라는 일반규정을 두었다.
- 제정법에서는 이 체계를 이어가되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련 단체(중소기업벤처부, 학교 등)의 압력을 받아 범위가 축소되었다. 특히 위 일반규정은 다음과 같이 이상한 형태로 바뀌면서 사문화되었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공중교통수단은 사실상 동일하다.
- 강은미 의원안도 이 체계를 유지하되 공중이용시설에서 소상공인 부분이 다시 포함되고, 공중교통수단에 전세버스를 추가하였다.
-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재해에서 규율대상을 positive 방식으로 열거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영책임자가 단지 ‘법이 정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요구가 너무도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율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것일까? positive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기소 사

건은 현재까지 없다(분당 정자교 붕괴 사건 무혐의,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아직 진행 중, 나머지는 확인되기도 어려움).

○ 주제 5. 종사자 (제2조 제5호, 특히 나목)

- 10만인 동의안과 달리, 제정법에서는 “대가를 목적으로”가 추가되었다. 그럼으로써 현장실습생 등 “대가”와 무관한 사람들이 보호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참고로 법 제정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장실습생’도 고등학교/대학교 여부나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근거법령이 다양하므로, 향후 입법논의 시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 강은미 의원안은 이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라.목에서 “교육훈련생”을 추가하게 되었다.
- 또한 10만인 동의안에 있던 “임대”는 제정법에서 빠졌다. 이는 타워크레인 등을 종합건설사가 임대하고 그에 수반하여 크레인기사가 오는 경우도 보호에 넣기 위한 목적이었다(추가 확인 필요). 강은미의원안에서는 “임대”가 다시 추가되었다.

○ 주제 6. 발주 (제2조 제7호)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특히 건설공사, 조선사업은 “발주자” 측이 위험방지의무를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건설업은 전체 산재사고사망의 50%를 차지하고 조선업 또한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발주 단계에서, 기간을 충분하게 주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비용을 적게주는 등이 문제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 제정법과 강은미 의원안은 이 부분이 전부 삭제되었다. 삭제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여서 현실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어떤 행위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대신에 영국법을 본따서 발주자가 설계단계부터 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의 ‘건설안전특별법’이 논의되었다(제21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발의되지 않았음)
조선사업의 발주자는 해외에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 현실적으로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었다.

○ 주제 7. 경영책임자 등 (제2조 제8호)

- 10만인 동의안의 가목의 취지는 법인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이사”에게도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목은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즉 흔히 말하는 ‘회장’, ‘총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 제정법 가목 전단은 위 다목의 문구만 다듬었다. 굳이 “대표이사”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고 제정법과 같이 정하면 ‘회장’까지 기소할 수 있다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실제로 최초 중대재해 발생 사건인 삼표시멘트 사건에서는 사망자들이 소속된 법인인 ‘삼표시멘트’가 아니라 지주회사인 ‘(주)삼표’의 대표인 정도원이 기소되었다.

- 문제는 제정법 가목 후단이다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예를 들어 CSO (Chief Safety Officer)를 선임하고 그에게 권한을 지워주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였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로 취급된다는 것이다.¹²⁾

- ㄴ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지우기 위해서 제정법 가목 후단을 삭제했다. 그리고 ‘나목’을 신설해서 “가목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넣었다. 사건으로는,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가목 전단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 주제 8. 적용범위 (없음 / 제정안 제3조, 부칙)

- 제정법 제3조에서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사업장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부칙에서는 법 시행 후 2년까지는 50명(억) 미만 사업/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제정법 제3조를 삭제했다. 부칙의 경우는 이미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태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12) 다만 실무에서는 서류로만 권한을 넘겨줬는지 아니면 실제 권한행사까지 이어졌는지까지 판단한다.

○ 주제 9. 경영책임자 의무 총론 (제3조 제1항 - 특히 “소유”, “발주”)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고자 했다. 생산라인을 소유하면서도 업무 전체를 도급주는 경우에 도 책임을 지우고자 함이었다 (현대모비스 등). 그러나 “소유자”라는 이유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10만인 동의안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인데 이는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마찬가지로 의무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포괄적 의무이다.
- 제정법에서는 이 의무가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핵심은 제4조제1호이다(시행령 제5조에서 9가지 의무로 구체화됨). 여기 9가지 의무는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의 내용이라고 한다. 10만인 동의안은 의무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주도 하에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의무내용이 다듬어졌다.

○ 주제 10. 경영책임자 의무 각론 1 중대산업재해 (제3조 제2항 vs 제정법 제4조 제1항 각 호)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제1항에서 의무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각 조항을 지킬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고 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안법의 처벌근거조항인 38조와 39조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괴롭힘 방지 의무 조항이다. 특히 근기법이 들어간 이유는 자살의 경우에도 중처벌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과로사’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으나 이는 근기법상 근로시간 조항이 아니라 39조 보건조치 조항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제정법에서는 각 법률상의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지우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 급에서 해야 할 의무를 따로 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 강은미 의원안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에 관해서도 경영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했다. 이는 과로사나, 괴롭힘 자살도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 참고로 호주 빅토리아주 산안법에서는 정신질환 유발이나 그로 인한 자살이 있었던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한다(이른바 ‘브로디 법’).¹³⁾ 범죄에 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

○ 주제 11. 경영책임자 의무 각론 2 중대시민재해 (없음 / 제정법 제9조)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애초에 중대시민재해 개념이 따로 없었다. 따라서 의무에 관해서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 제정법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의무 내용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중대산업재해가 ISO 45001을 벤치마킹 한 것과는 달리, 벤치마킹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산업재해 부분의 의무 내용을 변용했으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주제 12. 도급 및 위탁관계 (제4조 - 불필요?)

- 10만인 동의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 등이 제3자에게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공동으로 중처법상 의무를 진다고 정했다. 이는 불필요한 내용이다. 이미 “종사자” 개념에서 다단계 도급이 있더라도 그 수급인의 근로자나 특고노동자, 심지어 수급인 본인에 대해서도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처법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 또한 앞서 언급된 이유들로 제정법에서는 삭제되었다.
- 10만인 동의안 제4조 제2항은 시설, 설비 등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도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제정법 제4조 본문으로 편입되었다.
- 강은미의원안에서는 여기에 “발주”자의 책임을 추가했다.
- 제정법 제5조는 수사실무에서 전혀 쓰이고 있지 않아 사문화된 내용이다. 실제로도 제4조와의 구별되어 별도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 주제 13. 자연인 처벌 (제5조)

- 10만인 동의안 제1항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망의 경우 3년 이상 징역, 5억 이하

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40>
매일노동뉴스 - “정신질환 유발로도 사업주 처벌” 호주 빅토리아주 산안법”

벌금, 비사망은 5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제정법에서는 사망의 경우 1년 이상 10억 이하 벌금, 비사망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사망의 경우가 하향되었다.

강은미의원안은 사망의 경우만 다시 3년 이상으로 돌려놓자는 의견이었다. 어찌되었든 산재사망에 있어서 하한형을 정한 것은 성과이다.

- 10만인 동의안 제2항은 가중처벌 요건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양형기준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삭제되었다.
- 10만인 동의안 제4항은 다수 피해자 발생한 경우 형량을 단순합산을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삭제되었다.

○ 주제 14. 법인 처벌 1 - 형벌 (제6조 제1항, 제2항)

- 10만인 동의안 제1항은 자유형이 불가능한 ‘법인 사업주’의 경우 1억 이하 20억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다.

제정안은 사망의 경우 50억 이하, 비사망은 10억 이하로 변경되어 하한형이 사라졌다.

강은미 의원안은 사망의 경우 2억원 이상, 비사망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한형이 부활했다.

- 10만인 동의안 제2항은 경영책임자가 하급자에게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하도록 정했다.

제정법에서는 위 내용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100분의 1로 하향조정되고, 가중요건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부활하는 내용을 담았다.

- 참고로 매출액(수입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하는 것은 그 단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에서도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음

(별지 2. 참조)

○ 주제 15. 법인 처벌 2 - 행정처분, 이행관찰 (제6조 제3항, 제4항)

- 10만인 동의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영업허가 취소, 5년 이내 영업정지, 5년 이내 이행관찰,

무기 또는 1년 이상 공공입찰제한을 정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은 “이행관찰”이다. 이는 법인에게 주어지는 ‘보호관찰’의 일종으로, 프랑스 법 등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방통대 최정학 교수님 등). 요약하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파견되고(마치 파산관재인이나 외부이사와 같이), 기업 경영을 바꾸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고(경영체계 중 ~~한 사항을 개선하라)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관찰하는 제도이다.

10만인 동의안 제4항은 이행관찰을 불이행할 경우의 제재조치를 미리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제정법에서는 과도한 제재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특히 법원이 행정제재를 직접 하는 것은 3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행관찰은 전례가 없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 강은미 의원안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 주제 16. 인과관계 추정 (제7조)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다음의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정했다 :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정법에서는 이 내용이 “유죄추정”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다만 유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반헌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또한 추정은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경고성 조항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 실무상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이 확인되는 이상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제정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의무위반만 입증될 수 있다면 의무위반과 중대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의무내용이 구체적일수록, 다른 원인으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짐. 중처법은 그 반대임)

- 강은미의원안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 주제 17. 공무원 처벌 (제8조)

- 10만인 동의안은 공무원(기관장 포함)이 자신의 권한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이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공무원이 사업주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참사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 직무유기는 구성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고 2) 그나마 뇌물죄로만 처벌이 되어왔던 것에 관한 반성으로서 도입된 조항이다.
- 제정법에서는 위 조항은 삭제되었다.
 - 1)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 2) 기관장이 아닌 일개 공무원, 특히 실제로는 이 조항이 도입되면 담당 주무관만 처벌받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들은 지금도 다소 억울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엮여들어 가서 처벌받고 있는데 사실상의 가중처벌이라는 비판이다.
 - 3) “야기”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었다.
-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이 조항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 주제 18. 양형절차 특례 (제9조)

- 10만인 동의안은 유무죄 선고를 먼저 하고, 형량(양형) 선고를 위한 기일을 별도로 잡으라는 취지이다.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또는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는 당시 논의 중이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었던 내용을 이 법에 먼저 집어넣은 것이다.
- 제정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위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단지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2항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조항으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 강은미 의원안은 유무죄 선고와 양형 선고를 분리하는 내용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더욱 상세하게 규정했다.

○ 주제 19. 법인 처벌 3- 허가취소 (제10조)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서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도록 정한다. 그러면 관할 행정청장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재량껏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제재를 정한 것은 아니다.

- 제정법과 강은미의원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없다.

○ 주제 21. 처벌사실 공표 (제11조)

- 10만인 동의안에서는 “처벌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이 공표하도록 정했다.

ㄷ 제정법에서는 “형이 확정되면 이를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제정법 제12조).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장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를 공표하고 있다.

- 강은미 의원안에서는 산안법 제56조에 따른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한 직후에 그 조사 내용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중처법 고유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재해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 주제 22. 징벌적 손해배상 (제12조)

- 10만인 동의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상한선만 “10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제정법은 “5배 이내”로 정했다.

강은미 의원안은 “3배를 하한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 실무상으로는 이 조항은 ‘합의’를 할 때는 활용되고 있다. 아직 민사법원의 판결은 없다. 끝.

별지 1 : 【3단 비교표】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동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u>이상 발생한 재해</u>	가 <u>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u>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u>급성중독 등</u>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직업성 질병 자가 <u>1년 이내에 3명 이상</u> 발생	령령으로----- -----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 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 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원 료, 제조물 또는 <u>제조물의 부산물</u> ----- -----설계, 제조, 운송-----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u>호 본문 및 각 목에 규정된 건설공</u> <u>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u> <u>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u> ----- -----하거나 이로 인한 환경상 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여----- ----- ----- ----- ----- -.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4. -----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라. 그 밖에 <u>공중을 상대로 교육·강연·공연 등이 행하여지는 장소</u>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u>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u>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u>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u>바닥면적</u>(「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u>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u>	----- ----- ----- ----- <u><단</u> <u>서 삭제></u>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영업장 라. (현행과 같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u>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u>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의 선박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항의 항공기	5. (현행과 같음) 가.~마. (사실상 동일)	5. (현행과 같음)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u>전세버스운송사업</u>----- 라, 마 (현행과 같음)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실상 동일)	6. (현행과 같음)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7. (사실상 동일)	7. -----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가. (사실상 동일) 나. ----- ----- <u>대가를 목적으로</u> ----- ----- 다. (사실상 동일)	----- ----- 가. (현행과 같음) 나. -----위탁, 임대----- ----- ----- 다. (현행과 같음) <u>라. 직업교육, 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받는 교육훈련생</u>
6.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사실상 동일)	8. (현행과 같음)
7. “발주”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는 발주 나. 조선사업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선박”(고정식	(없 음)	(없 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해양플랜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조, 개조, 정비, 변경 등에 관하여, 가목의 “건설공사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있는 자가 하는 발주		
8.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u>및 이사</u>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u>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u>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u>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u>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9. (현행과 같음)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u>사람</u> <u>나. (신 설) 가목에 준하여 사업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u> 다. (현행 나목과 같음)
(없 음)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u>소유·운영·관리</u>하거나 <u>발주한</u> 사업 또는 사업장, <u>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u>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u>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u>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u>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u>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위험방지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8조제1항, 제59조 제1항,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2항,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근로기준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 (현행과 동일) 4. 「<u>근로기준법</u>」,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 -----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제76조의2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u>원료나 제조물</u>로 인해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u>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조 제1항 일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 ----- ----- ----- ----- --원료, 제조물 또는 제조물의 부산물-----설계, 제조, 운송-----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이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로----- ----- -----안전 및 정신건강----- ----- -----.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 ----- ② ----- ----- ----- -----결함, 운영상의 과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 및 그 인접장소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으로--- ----- -----안전 및 정신 건강-----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도급 및 위탁관계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의 귀속)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u>임대</u>, 용역, 도급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u>공동으로 제</u>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u>위탁</u> 등을 행한 경우에는 <u>제3자의</u>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발주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 -----<u>위탁, 발주</u>-----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u>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u> <u>②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u>	<u>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
제5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제1항의 행위로 사망을 제외한 중대재해에 이르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u>1년</u>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 ----- ----- -----<u>3년</u>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에 대하여 사망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없 음>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 ----- ----- -----3년----- ----- -----. -----. ② (현행과 같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때 ② 법인을 제1항에 따라 처벌할 때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u>100분의 1 이상</u>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허가의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없 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대한 영업정지 3. 5년 이하의 이행관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입찰자격 제한		
④ 법원이 제3항 제3호의 이행관찰을 병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3항 제1, 2, 4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할 것을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회복 2. 관련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3.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개선조치 4. 공익적 급부제공 5. 공무원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현장감독 6. 개선사항의 공개	<없 음>	
<없 음>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① - 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 ----- ----- ----- ----- ----- ----- ----- 1. -----2억원 이상----- 2.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제9조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 또는 방치한 경우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에서 정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당해 사고 이전 5년간 사업주,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또는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2.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없음>	제12조(인과관계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라 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제5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당해 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장을 훼손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 진상조사,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기간·횟수와 그 정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기상조건, 중대재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그 밖에 중대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8조(공무원의 처벌) 공무원(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권한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없 음>	제20조(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위임전결에 의해 권한을 위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 의 감독 2.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 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 허가		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 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 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 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 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 또는 인·허가
제9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 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 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 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 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	제15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현행 제14조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제 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21조에도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은 「형사소송법」의 양형절차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다만 국민양형위원에 당해 사건의 피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선고 시 제2항에 따라 확인된 심사결과, 피해자 등의 의견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전문가위원회 심사 결과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한 뒤 제16조에 따른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국민양형위원 지정 등) ① 법원은 국민양형위원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민양형위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2.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 등에 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원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에 회부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또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양형위원후보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7인 이상의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양형위원이 지정된 경우 국민양형위원 대표는 심의가 종료되면 국민양형위원 전원에 대하여 개개인의 구체적인 제시 형량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양형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민양형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즉시 이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국민양형위원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양형위원의 지정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제10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없음>	정한다.
제11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10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 ----- -----<u>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른 원인조사를 시행한 경우 그 조사 직후</u>----- ----- -----<u>기술적·구조적 원인</u>----- ----- -----.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자 또는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1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 ----- ----- ----- ----- -----3배를 하한액으로 하여----- -----. ----- -----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한-----.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없 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제19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현행 제16조와 같음)

① 10만인 동의안	② 제정법	③ 강은미 의원안
	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 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2]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관한 외국 양형 기준 조사>

2022. 5. 손익찬 변호사

I. 조사대상과 대상문헌 (영국)

- 영국의 경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을 근거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미확보를 범죄를 처벌함. 이 법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피해발생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해자가 ‘근로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인 경우도 처벌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또한, 영국은 위 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도 있음.
-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에 “산업안전보건범죄, 기업과실치사법 및 음식안전위생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발간함.¹⁴⁾ 이 보고서에서는 음식안전위생범죄를 제외한 경우만 살펴볼 것임(단체 및 개인이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기업과실치사법 위반). 참고로,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벌금에 관한 양형기준도 상세하게 두고 있음.
- 이어서, 영국 양형위원회는 2019년 4월 4일 상기 양형기준 시행 이후의 ‘평가’에 관해서 19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했으므로,¹⁵⁾ 이 글에서는 이 평가 내용 또한 간략히 다루고자 함.

II. 산안범죄 및 기업과실치사법에 관한 양형기준 (영국)

<요약>

- 아래에서는 3개 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단체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에 주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음.
- 1단계는 범죄유형 구분임. 불법성(culpability)은 법위반에 기율인 주의정도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하고, 피해(harm)는 피해발생의 가능성과 심각성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14) Sentencing Council(UK Government)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February, 2016), 영국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crown-court?s&collection=health-and-safety-offences>, (2022. 5. 2. 21:00 PM UTC+09:00).

15) Sentencing Council(UK Government) “Assessing the impact and implementation of the Sentencing Council’s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4, April, 2019), 영국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Health-and-safety-guideline-assessment.pdf>, (2022. 5. 2. 21:00 PM UTC+09:00).

- 2단계는 최근 3년간 단체의 재정 정보를 확인해서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단체규모를 4개로 구분함. 단체가 재정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느 벌금이라도 낼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함. 그에 따라 64개 기준이 제시됨(단체규모 4개 × 불법성 4단계 × 피해유형 4개 = 64개). 그 안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짐. 단 단체규모가 상한선(매출액 5천만 파운드)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양형기준표 이상으로 선고가 가능. 또 가중,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서 이동할 수도 있음.
- 3단계는 2단계를 통해서 산정된 벌금액이 벌금형의 기본원칙 즉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재정상황을 반영한 것인지를 다시 심사해야 함. 또 벌금액은 경영진과 주주가 법준수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주어야 함.
- 4단계는 벌금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법준수에 드는 비용, 근로자나 이용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
- 5단계는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 6단계는 재판에서 유죄인정한 경우 감경, 7단계는 부가명령(부가형), 8단계는 경합범 가중, 9단계는 논증에 관한 부분임.
- “개인이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도 위와 유사한 논리적 전개를 따르고 다만 인신구속이 전제되므로 그에 따른 특수한 지점들만 고려하면 됨.
-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는 산안법과 달리 인사사고가 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그에 따른 특수한 지점들만 고려하면 됨.

1. 단체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¹⁶⁾

1단계 : 범죄 유형을 구분한다

○ 불법성 (Culpability)

- 아주 높음 : 고의적(deliberate) 위반 또는 법에 대한 노골적(flagrant) 무시
- 높음
 - 적절한 기준에 현저하게 모자라는 경우임. 예를 들어,
 - ◎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조치를 취함
 - ◎ 근로자 등이 한 문제제기를 무시함
 - ◎ 선례(prior incident(s))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음

16) 벌금 상한 없음

◎ 오랜 기간 동안 범위반을 저지름

● 안전보건에 있어서 심각한 실패 또는 관리체계에서 실패(systemic)

- 중간

●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함 - '높음'과 '낮음'에 설명된 기준 사이

● 관리체계(system)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하게 준수되거나 시행되지 않음

- 낮음

● 적절한 기준에 못미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위험을 다루기 위해 상당히 노력함

◎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나 상황이 없었음

● 경미한 실패이고 독립된 사건으로 발생함

○ 피해 (Harm)

- 안전보건범죄는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관리에 실패한 경우와 관련된 것으로, 실제 손해를 유발했음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범위반은 피해의 위험을 만든 것 그 자체에 있다 (The offence is in creating a risk of harm).

1) 위험이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Seriousness of harm risked)과 피해발생의 가능성(likelihood of harm) 2가지를 고려하여 유형화함

	위험이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		
	Level A ●사망 ●육체적·정신적 손상 : 평생 기본적인 부분까지 간병이 필요 ●기대 수명의 심각한 감소	Level B ●육체적·정신적 손상 : A정도는 아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적 능력 상실 또는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정도 ●점진적인, 영구적인 또는 불가역적인 상태	Level C ●A나 B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가능성			
높음	피해 유형 1	피해 유형 2	피해 유형 3
중간	피해 유형 2	피해 유형 3	피해 유형 4
낮음	피해 유형 3	피해 유형 4	피해 유형 4 (최저기준에서 시작)

2)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해 유형을 판단할 때 아래 2개 인자를 고려해야 함

i) 범위반으로써 위험에 처해진 근로자 또는 시민의 수 : 수가 많을수록 커짐

- ii) 법위반이 실제 손해의 주요한 원인(significant cause)이었는지 여부 : 피해자 측의 행위는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음. 여기서 주요한 원인이란, 최소한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아주 작은 원인(more than minimally, negligibly or trivially) 이상으로 기여한 인자로, 유일한 또는 주된(sole or principal) 원인일 필요는 없음.
- 위 인자에 1개 또는 2개 모두 해당하면 법원은 '피해 유형'을 상승시키거나 2단계의 양형표에서 '시작 지점'을 올려야 함. 단 법원은 실제로 발생한 위험이, 피해 발생 가능성으로 평가된 내용보다 더 낮다면 '피해 유형'을 상승시키면 안됨.

2단계 : 시작 지점과 유형별 범위

○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것

- 법원은 최근 3년의 재정상태를 확인함
만약 범죄자(offender)가 공개를 거부하거나 또는 법원이 얻은 정보가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면,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할 재량이 있고, 범죄자가 어떠한 정도의 벌금이라도 낼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함(the inference that the offender can pay any fine).
 1. 회사의 경우 : 연간 재정(annual accounts) : 총매출, 세전이익, 이사의 보수, 대출, 근로자 연금불입액 등
 2. 조합의 경우(partnerships) : 위와 유사함
 3. 지방 정부, 소방청 및 공공기관의 경우 : 연간 수입 예산(Annual Revenue Budget). 부적절한 지출이 있지 않는 한(unless inappropriate expenditure is suggested) 세부적인 지출항목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음
 4. 의료 조합(health trust) : NHS에 제공되는 자료를 근거로 판단
 5. 비영리단체(charities) : 연간 재정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단체를 4가지로 분류하고, 불법성 크기 및 피해 유형별로 시작지점(starting point)과 범위(category range)가 있는 표를 제시함. 부록 참조.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가중, 감경 요소를 두고 있음(예시적). 범위를 벗어나서 선고하는 것도 가능. 유사한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가중 요소임.

<법정 가중요소>

- 이전의 유죄판결 : a) 이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 b) 유죄판결 이후 본 범죄 발생시까지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임의적 가중요소>

- 안전에 관하여 아낀 비용
- 범죄행위에 관한 고의적 은폐
- 법원의 명령에 관한 위반
-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 안전보건 기록이 부실함
- 문서나 면허의 위조
- 행정부가 세운 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함
- 취약한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음

<임의적 감경요소>

- 이전에 유죄판결이 없거나 연관된 또는 최근의 유죄판결이 없음
-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한 증거가 있음
-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넘어서 행정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함
- 안전보건 관련 기록이 충실함
- 안전보건에 관한 절차가 효율적임
- 스스로 보고하고, 협조적이고, 책임을 인정함

3단계 : 매출액 등 기준으로 한 위 벌금액이 범죄와 비례성이 있는지

- 벌금을 정하는 일반 원칙이 있음. 법원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범죄행위의 중대성 및 범죄자의 재정상태 고려해야 함. 처벌은 공평하고 비례성을 갖춰야 함(in a fair and proportionate way) : 처벌의 목적, 범위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실현의 방해와 제거를 고려함.
- 벌금은 경영진과 주주가 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도록 만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주어야 함(sufficiently substantial to have real economic impact which will bring home to both management and shareholders the need to comply with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 매출액 기준 벌금에 관한 재심사(review)를 해야 함 : 2단계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이 적정한지를 다시 보고, 필요하면 상향·하향 조정을 함
- 법원은 단체의 경제적인 현실상태를 토대로, 처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함
- 선고형을 정하기에 앞서 법원은 아래 인자를 고려해야 함

- 수익성(profitability) : 매출규모와 영업이익률(profit margin)
 - 범위반 행위로 인한 경제적으로 환산가능한 이익. 예를 들어 비용절감 등은 2단계에 고려되어야 함. 이를 위해 법원은 행정부에게 법준수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정보를 조사할 수 있음.
 - 벌금이 범죄자를 폐업시킬 정도인지. 질이 나쁜 사례에서는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음(this may be an acceptable consequence).
- 단체가 어떤 벌금이라도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법원은 납부기간을 유예하거나 할부로 납부하게 하는 것도 가능함

4단계 : 다른 인자에 관한 고려

- 벌금이 단체 내 또는 외부의 무고한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지 고려할 것
- 피해자에 대한 배상에 관한 악영향
 - 범죄자가 법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의 악영향
 - 근로자, 이용자, 고객 및 지역경제에 관한 악영향(주주나 이사진에 대한 악영향은 고려하지 않음)
-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벌금이 감액되어야 함

5단계 : 감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고려

- 수사나 기소에 협조(assistance give(or offered to the prosecutor or investigator)하면 감경 (타법에 근거 있음)

6단계 : 유죄 인정에 따른 감경

- 재판 단계에서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하면 감경 (타법에 근거 있음)

7단계 : 배상과 부가 명령

- 교정 (Remediation)
- 처벌에 부가 또는 대신하여 교정명령 가능 (1974 산안법 42(1))
 - 범죄자가 선고 시까지 교정명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감경받을 수 없음
 - 교정명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벌금에 영향을 못미침

○ 몰수 (Forfeiture)

-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몰수대상 (1974 산안법 42(4))

○ 배상 (Compensation)

- 실제 손해가 있다면 배상명령을 고려해야 함. 배상이 벌금이나 기소에 드는 비용 (prosecution costs)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함

8단계 : 경합범 가중(Totality Principle¹⁷⁾)

- 1개 이상의 범죄행위에 관한 선고의 경우 Offenc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Totality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고함

9단계 : 논증 (Reasons)

- 선고의 이유를 논증하고 효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음

2. 개인이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¹⁸⁾

1단계 : 범죄 유형을 구분한다

○ 불법성 (Culpability)

- 아주 높음 : 고의적(intentionally) 위반 또는 법에 대한 노골적(flagrantly) 무시
- 높음 : 법위반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함
- 중간 :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함
- 낮음 : 경미한 과실로 위반함.
 -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았지만, 위험을 다루기 위해 상당히 노력함
 -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나 상황이 없었음

17) 우리나라의 경합범 가중과 유사한 단계임

18) 벌금의 경우 상한이 없고, 징역형은 2년 이하임

- 경미한 실패이고 독립된 사건으로 발생함

○ 피해 (Harm)

- 위 1.의 경우와 동일함.

2단계 : 시작 지점과 유형별 범위

○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것 (위 1.과 동일함)

○ 시작 지점과 범위를 정함

- 징역형 기준을 통과했는가?
- 그렇다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가?
- 그렇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사회봉사명령(community order)가 가능한 범위내에 있다면, 사회봉사명령 기준을 통과했는지를 검토해야 함. 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벌금형 선고가 우선됨.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벌금과 사회봉사명령 동시 선고도 가능함.

○ 벌금의 경우 불법성과 손해 정도를 기초로 정함. 부록 표 참조.

○ 가중, 감경요소를 고려할 것

법정 가중요소에 '보석기간 중의 범죄'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사함 (임의적 감경요소에는 인신구속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추가됨 - 평소 성향이나 연령, 건강상태 등)

○ 사회봉사에 관한 양형기준이 있으나, 설명 생략함 (법체계가 다름)

○ 징역형의 양형기준

1) 징역형 기준(threshold)을 통과했는가?

- 벌금이나 사회봉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함
-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함

2) 인신구속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인가?

3) 범위반에 부합하는 가장 짧은 기간을 찾아야 함

4)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

집행유예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가 적절한 경우
공중에 위험을 끼친 경우	피해회복에 관한 전망
인신 구속에 의해서만 징벌이 가능	감경요소가 있음
법원 명령을 어긴 전력이 있음	인신 구속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경우

3단계 : 선고에 있어 경제적 요소를 심사함

- 선고형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에 있어서 3, 4단계를 결합하여 심사함.
상세 내용은 생략함.

4단계 : 감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고려

- 수사나 기소에 협조(assistance give(or offered to the prosecutor or investigator)하면 감경 (타법에 근거 있음)

5단계 : 유죄 인정에 따른 감경

- 재판 단계에서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하면 감경 (타법에 근거 있음)

6단계 : 배상과 부가 명령

7단계 : 경합범 가중(Totality Principle¹⁹⁾)

8단계 : 논증 (Reasons)

9단계 : 보석 기간 고려 (Consideration for time spent on bail)

- 법원은 보석기간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고려해야 함

19) 우리나라의 경합범 가중과 유사한 단계임

3. 기업과실치사법²⁰⁾

1단계 : 범죄의 심각성 규정

○ 산안법과 마찬가지로 손해(harm)과 불법성(culpability)가 중요함.

(a) 심각한 부상이 얼마나 예측가능했는가?

정부기관, 근로자 등의 경고나 자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near misses²¹⁾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면 중대성이 커짐

(b) 범위반이 통상적인 기준에 얼마나 미달했는가?

산업계의 통상적인 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 감독, 보고 등이 부실했다면 고려

(c) 이러한 범위반이 이 단체에서 얼마나 흔한가?

독립적인 사건인지 아니면 체계적인 실패가 현실화된 것인지를 따져야 함.

(d) 한명 이상이 사망했는지, 다른 사람의 사망에 대한 높은 위험이 있는지, 사망에 부수되어 심각한 부상이 있었는지

피해자 숫자가 많을수록 심각성이 증가함

- 범죄 유형 A : (a) - (d)의 피해 또는 불법성 수준이 높음

- 범죄 유형 B : (a) - (d)의 피해 또는 불법성 수준이 더 낮음

2단계 : 시작 지점과 유형별 범위

○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것 (1.과 동일함)

○ 불법성과 손해 정도를 기초로, 부록 표 참조.

○ 가중, 감경요소를 고려할 것

대부분 유사함. 임의적 감경요소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됨 : 사망에 관하여 범죄자의 범위반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개입한 경우 (단, 피해자 측의 행동이 기여한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범죄자는 근로자나 다른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면 이것을 보호할 의무도

20) 벌금 상한 없음

21)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았으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아차사고'라고 번역되기도 함

있음)²²⁾

3단계 : 매출액 등 기준으로 한 위 벌금액이 범죄와 비례성이 있는지

○ 세부적인 내용은 1.과 동일함

4단계 : 다른 인자에 관한 고려

○ 세부적인 내용은 1.과 동일함

5단계 : 감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고려

- 수사나 기소에 협조(assistance give(or offered to the prosecutor or investigator)하면 감경 (타법에 근거 있음)

6단계 : 유죄 인정에 따른 감경

- 재판 단계에서 유죄 인정(guilty plea)을 하면 감경 (타법에 근거 있음)

7단계 : 배상과 부가 명령

○ 기업과실치사법 제10조에 정한 부가명령 발부 가능 (상세내용 생략)

8단계 : 경합범 가중(Totality Principle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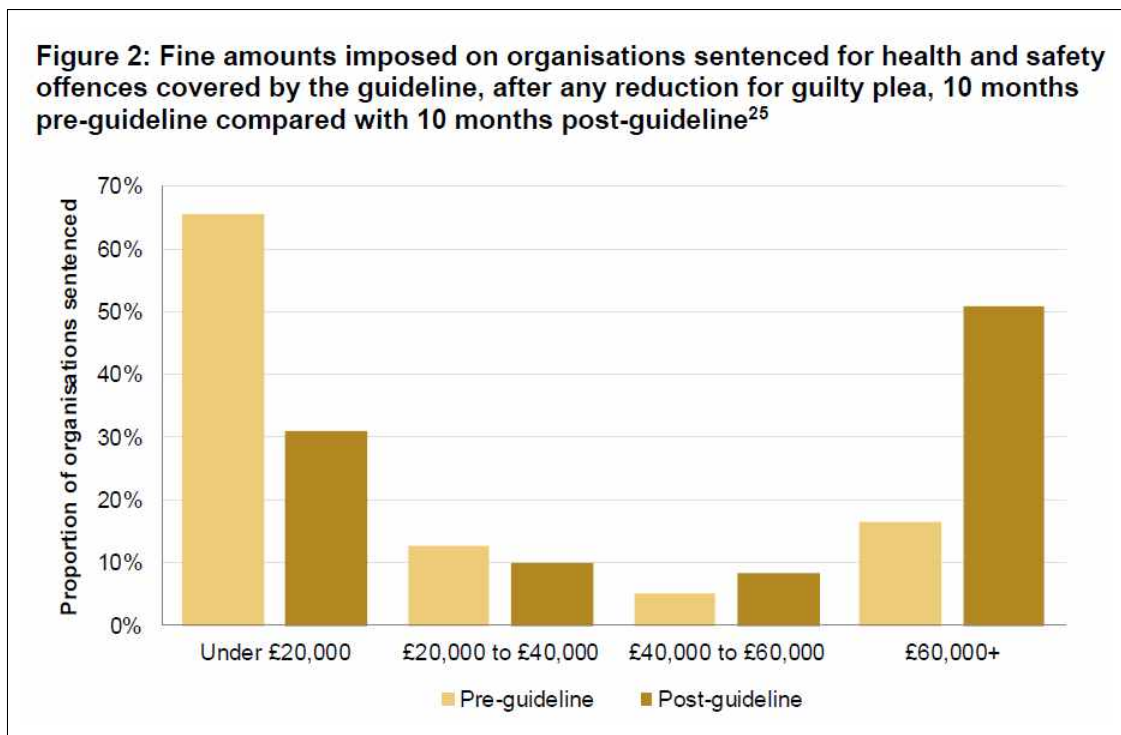
9단계 : 논증 (Reasons)

22) 괄호 안 : however, actions of victims are unlikely to be considered contributory events. Offenders are required to protect workers or others who are neglectful of their own safety in a way which is reasonably foresee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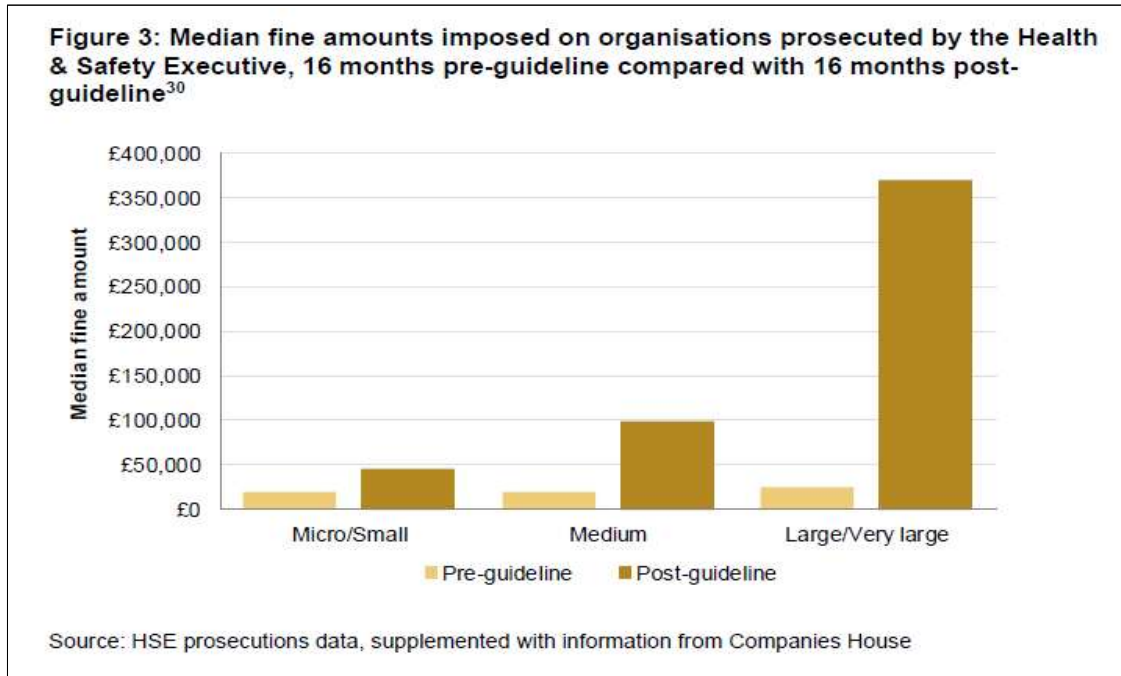
23) 우리나라의 경합범 가중과 유사한 단계임

Ⅲ. 양형기준 시행 이후 평가보고서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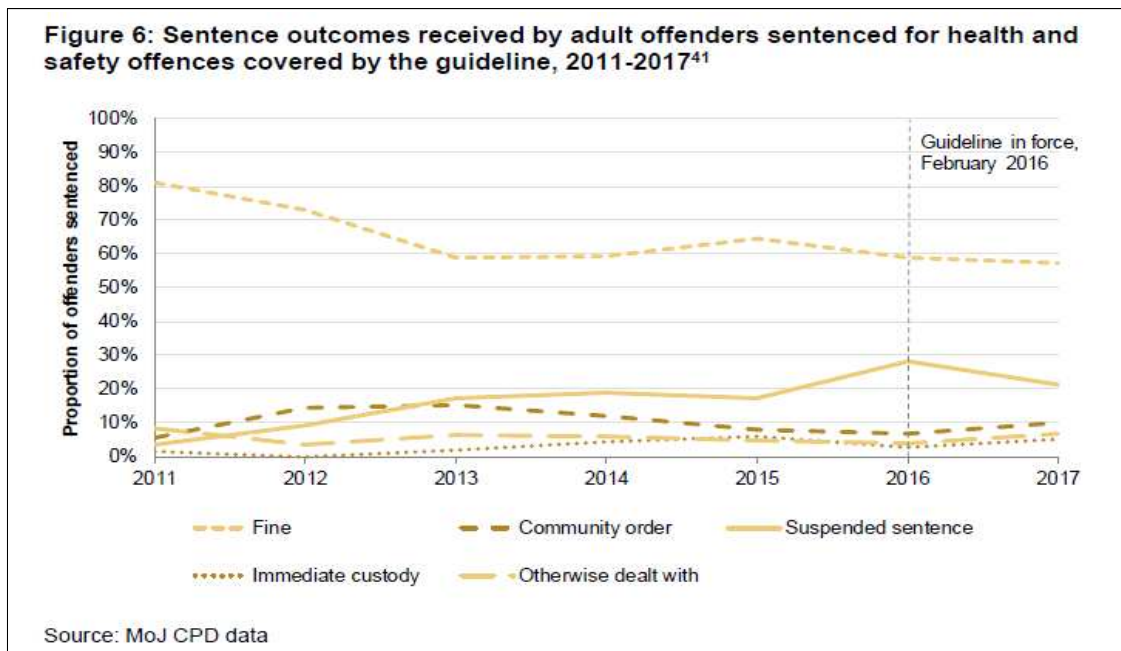
-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의 선고형의 변화를 비교함.
- 개정 전 10개월 동안에는 2만 파운드(3천1백만 원) 이하로 선고된 사건이 60%를 넘었음. 반면에 개정 후 10개월 동안에는 위 구간은 30%정도로 현저히 감소함. 반면에 6만 파운드(9천4백만 원) 이상으로 선고된 사건은 개정 전에는 30%였으나 개정 후 50%로 크게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개정 전 산안법의 벌금형 상한선이 1억원(양벌규정도 동일)이었으나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 평균은 4~500만원 수준이었음.
개정 후 산안법의 벌금형 상한선이 1억원(양벌규정은 10억원)으로 변화가 있었으나 벌금액 평균액이 10배 상승하지는 않았음.
영국은 산안법 위반의 벌금형에 상한선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국과 우리나라의 벌금형의 차이는 시사점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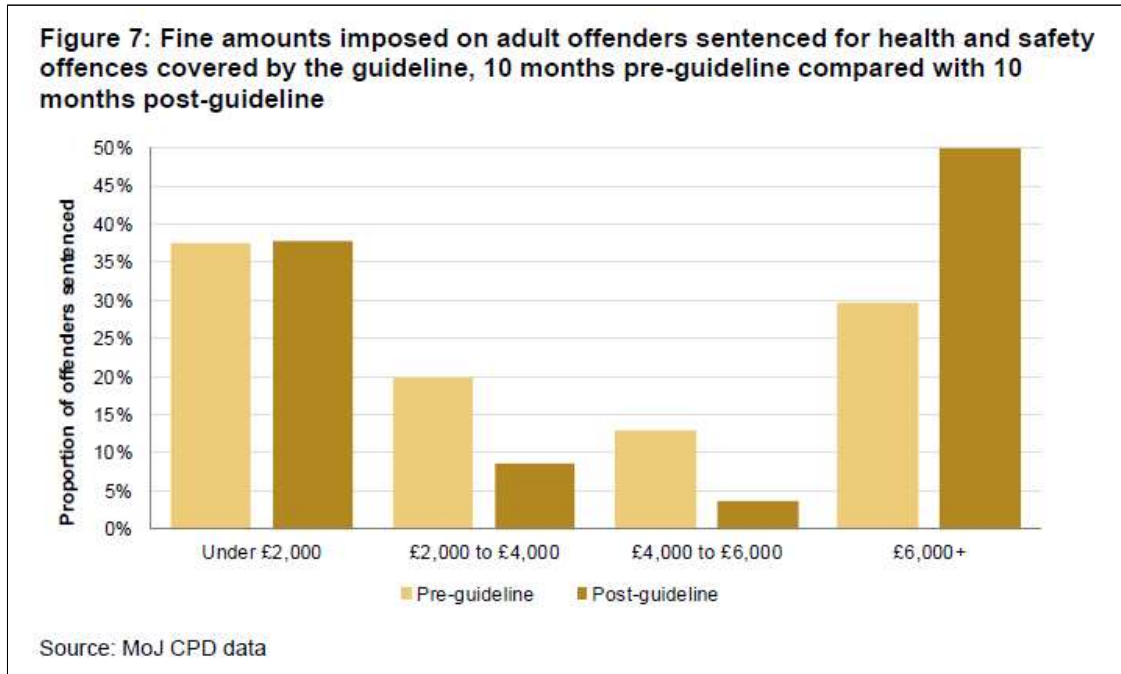
- 단체의 규모별로 보면, 큰 규모(large/very large) 단체의 벌금액이 2만5천 파운드(4천만 원)에서 35만파운드(5억5천만 원)으로 14배 가량 증가함



- 개인의 산안법 위반은 양형기준 시행 이전과 이후 10개월을 비교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고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사회봉사와 인신구속이 소폭 증가하였음. 또, 높은 액수의 벌금형 선고 비율이 더 증가함.



- 또 개인의 위반에 관한 벌금의 경우, 6천 파운드(940만 원) 이상으로 선고된 비율이 새 양형기준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30%에서 50%로 20% 이상 증가함.



- 기업과실치사법은 지난 10년간 20건 정도만 재판을 받았으므로 시행 전후를 비교하기엔 표본이 부족했음.

IV. 양형통계 조사 - (호주 빅토리아주)

- 호주 빅토리아 주의 경우, 영국과 유사한 내용으로 2004년 산업안전보건법(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을 두고 있음.²⁴⁾ 그리고 2019년에 산업안전 과실치사처벌 조항이 이 법에 추가로 삽입됨(Part 5A-Workplace manslaughter). 영국과 같이 상세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다만 선고된 형량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고 있음(단 산업안전 과실치사처벌 조항은 시행된지 얼마 안되어서 통계가 없음). 이 보고서에서는 법 제21조 위반(정식재판), 법 제23조 위반(정식재판), 법 제21조 위반(치안판사 재판), 법 제26조 위반(치안판사 재판)에 관한 통계를 검토함.
- 참고로 호주의 경우 법에서 벌금액수가 아니라 ‘Penalty unit’으로 상한선을 정함. 그리고 호주 정부가 시기별로 1 페널티 유닛의 가치를 정함. 2020년 7월 1일부터 1 페널티유닛은 222 호주달러임. 다만 통계는 페널티 유닛이 아닌 호주달러를 기준으로 산정됨.
- 법 제21조 위반(정식재판)²⁵⁾
중간값은 25만 호주달러(약 2억 2천만 원)으로, 최소 3만 호주달러에서 최대 1백만 호주달러(약 8억9천만 원)로 선고됨. 5만 호주달러를 넘는 사건이 전체 81.8%임
법 위반시 상한선은 자연인은 1,800PU(약 3억5천만 원), 단체는 9,000PU(약 17억7천만 원)
- 법 제23조 위반(정식재판)²⁶⁾
중간값은 12.5만 호주달러(약 1억 1천만 원)으로, 최소 1만 호주달러에서 최대 27.5만 호주달러(약 2억4천5백만 원)로 선고됨. 5만 호주달러를 넘는 사건이 전체 76.5%임
법 위반시 상한선은 자연인은 1,800PU(약 3억5천만 원), 단체는 9,000PU(약 17억7천만 원)
- 법 제21조 위반(치안판사 재판)²⁷⁾

24) Penalty unit values, “Table 1: Penalty unit values for breaches of Australian Government laws”, 호주 안보조사위원회,

<https://asic.gov.au/about-asic/asic-investigations-and-enforcement/fines-and-penalties/> (2022. 5. 9. 15:00 PM UTC+09:00).

25) Sentencing Advisory Council (State of Victoria), “Employer fail to provide and maintain a safe working environme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Vic) s 21, Higher Courts, 1 July 2015 to 30 June 2020”, 21 July 2021, 호주 빅토리아주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vic.gov.au/sacstat/higher_courts/HC_04_107_21.html (2022. 5. 9. 15:00 PM UTC+09:00).

26) Sentencing Advisory Council (State of Victoria), “Employer fail to ensure other people not exposed to health and safety risk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Vic) s 23, Higher Courts, 1 July 2015 to 30 June 2020”, 21 July 2021, 호주 빅토리아주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vic.gov.au/sacstat/higher_courts/HC_04_107_23.html (2022. 5. 9. 15:00 PM UTC+09:00).

27) Sentencing Advisory Council (State of Victoria), “Fail to provide and maintain a safe working environme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Vic) s 21, Magistrates' Court, 1 July 2016 to 30 June 2019”, 31 October 2019, 호주 빅토리아주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vic.gov.au/sacstat/magistrates_court/04_107_21.html (2022. 5.

병합사건(aggregate)의 경우 2만 호주달러(약 1천8백만 원) 이상이 31.8%, 비병합사건(non-aggregate)의 경우 2만 호주달러 이상이 36.4%로 가장 많음

○ 법 제26조 위반(치안판사 재판)²⁸⁾

병합사건(aggregate)의 경우 2만 호주달러(약 1천8백만 원) 이상이 32.1%, 비병합사건(non-aggregate)의 경우 2만 호주달러 이상이 35.9%로 가장 많음

법 위반시 상한선은 자연인은 1,800PU(약 3억5천만 원), 단체는 9,000PU(약 17억7천만 원)

○ 법 제39G조 위반(산업안전 과실치사) : 법 위반시 자연인의 경우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PU 이하 벌금임(약 197억 원). 양형통계는 아직 없음.

○ 소결 : 영국과는 달리 단체 규모별로 양형기준을 나눠놓지는 않았고, 그러다보니 단체규모별로 선고결과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선고되는 벌금형의 양이 영국에 비하여 과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산업안전 과실치사의 경우 자유형의 상한이 높고, 벌금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9. 15:00 PM UTC+09:00).

28) Sentencing Advisory Council (State of Victoria), “Fail to ensure workplace and means of entering and leaving are safe and without risk to health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Vic) s 26, Magistrates' Court, 1 July 2016 to 30 June 2019”, 31 October 2019, 호주 빅토리아 주 양형위원회

https://www.sentencingcouncil.vic.gov.au/sacstat/magistrates_court/04_107_26.html (2022. 5. 9. 15:00 PM UTC+09:00).

【부록 - 양형기준표】

1. 단체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Very large organisation

Where an offending organisation's turnover or equivalent very greatly exceeds the threshold for large organisations, it may be necessary to move outside the suggested range to achieve a proportionate sentence.

(서지 삽입을 위한 공백)

Large - Turnover or equivalent: £50 million and over

Large	Starting Point	Range
Very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4,000,000	£2,600,000 – £10,000,000
Harm category 2	£2,000,000	£1,000,000 – £5,250,000
Harm category 3	£1,000,000	£500,000 – £2,700,000
Harm category 4	£500,000	£240,000 – £1,300,000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2,400,000	£1,500,000 – £6,000,000
Harm category 2	£1,100,000	£550,000 – £2,900,000
Harm category 3	£540,000	£250,000 – £1,450,000
Harm category 4	£240,000	£120,000 – £700,000
Medium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300,000	£800,000 – £3,250,000
Harm category 2	£600,000	£300,000 – £1,500,000
Harm category 3	£300,000	£130,000 – £750,000
Harm category 4	£130,000	£50,000 – £350,000
Low culpability		
Harm category 1	£300,000	£180,000 – £700,000
Harm category 2	£100,000	£35,000 – £250,000
Harm category 3	£35,000	£10,000 – £140,000
Harm category 4	£10,000	£3,000 – £60,000

Medium - Turnover or equivalent: between £10 million and £50 million

Medium	Starting Point	Range
Very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600,000	£1,000,000 – £4,000,000
Harm category 2	£800,000	£400,000 – £2,000,000
Harm category 3	£400,000	£180,000 – £1,000,000
Harm category 4	£190,000	£90,000 – £500,000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950,000	£600,000 – £2,500,000
Harm category 2	£450,000	£220,000 – £1,200,000
Harm category 3	£210,000	£100,000 – £550,000
Harm category 4	£100,000	£50,000 – £250,000
Medium culpability		
Harm category 1	£540,000	£300,000 – £1,300,000
Harm category 2	£240,000	£100,000 – £600,000
Harm category 3	£100,000	£50,000 – £300,000
Harm category 4	£50,000	£20,000 – £130,000
Low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30,000	£75,000 – £300,000
Harm category 2	£40,000	£14,000 – £100,000
Harm category 3	£14,000	£3,000 – £60,000
Harm category 4	£3,000	£1,000 – £10,000

Small - Turnover or equivalent: between £2 million and £10 million

Small	Starting Point	Range
Very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450,000	£300,000 – £1,600,000
Harm category 2	£200,000	£100,000 – £800,000
Harm category 3	£100,000	£50,000 – £400,000
Harm category 4	£50,000	£20,000 – £190,000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250,000	£170,000 – £1,000,000
Harm category 2	£100,000	£50,000 – £450,000
Harm category 3	£54,000	£25,000 – £210,000
Harm category 4	£24,000	£12,000 – £100,000
Medium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60,000	£100,000 – £600,000
Harm category 2	£54,000	£25,000 – £230,000
Harm category 3	£24,000	£12,000 – £100,000
Harm category 4	£12,000	£4,000 – £50,000
Low culpability		
Harm category 1	£45,000	£25,000 – £130,000
Harm category 2	£9,000	£3,000 – £40,000
Harm category 3	£3,000	£700 – £14,000
Harm category 4	£700	£100 – £5,000

Micro - Turnover or equivalent: not more than £2 million

Micro	Starting Point	Range
Very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250,000	£150,000 – £450,000
Harm category 2	£100,000	£50,000 – £200,000
Harm category 3	£50,000	£25,000 – £100,000
Harm category 4	£24,000	£12,000 – £50,000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60,000	£100,000 – £250,000
Harm category 2	£54,000	£30,000 – £110,000
Harm category 3	£30,000	£12,000 – £54,000
Harm category 4	£12,000	£5,000 – £21,000
Medium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00,000	£60,000 – £160,000
Harm category 2	£30,000	£14,000 – £70,000
Harm category 3	£14,000	£6,000 – £25,000
Harm category 4	£6,000	£2,000 – £12,000
Low culpability		
Harm category 1	£30,000	£18,000 – £60,000
Harm category 2	£5,000	£1,000 – £20,000
Harm category 3	£1,200	£200 – £7,000
Harm category 4	£200	£50 – £2,000

2. 개인이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Very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8 months' custody	1 – 2 years' custody
Harm category 2	1 year's custody	26 weeks' – 18 months' custody
Harm category 3	26 weeks' custody	Band F fine or high level community order – 1 years' custody
Harm category 4	Band F fine	Band E fine – 26 weeks' custody
High culpability		
Harm category 1	1 year's custody	26 weeks' – 18 months' custody
Harm category 2	26 weeks' custody	Band F fine or high level community order – 1 years' custody
Harm category 3	Band F fine	Band E fine or medium level community order – 26 weeks' custody
Harm category 4	Band E fine	Band D fine – Band E fine
Medium culpability		
Harm category 1	26 weeks' custody	Band F fine or high level community order – 1 years' custody
Harm category 2	Band F fine	Band E fine or medium level community order – 26 weeks' custody
Harm category 3	Band E fine	Band D fine or low level community order – Band E fine
Harm category 4	Band D fine	Band C fine – Band D fine
Low culpability		
Harm category 1	Band F fine	Band E fine or medium level community order – 26 weeks' custody
Harm category 2	Band D fine	Band C fine – Band D fine
Harm category 3	Band C fine	Band B fine – Band C fine
Harm category 4	Band A fine	Conditional discharge – Band A fine

Fines

	Starting point	Range
Fine Band A	50% of relevant weekly income	25 – 75% of relevant weekly income
Fine Band B	100% of relevant weekly income	75 – 125% of relevant weekly income
Fine Band C	150% of relevant weekly income	125 – 175% of relevant weekly income
Fine Band D	250% of relevant weekly income	200 – 300% of relevant weekly income
Fine Band E	400% of relevant weekly income	300 – 500% of relevant weekly income
Fine Band F	600% of relevant weekly income	500 – 700% of relevant weekly income

3. 기업과실치사법

Very large organisation		
Where an offending organisation's turnover or equivalent very greatly exceeds the threshold for large organisations, it may be necessary to move outside the suggested range to achieve a proportionate sentence.		
Large organisation Turnover more than £50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7,500,000	£4,800,000 – £20,000,000
B	£5,000,000	£3,000,000 – £12,500,000
Medium organisation Turnover £10 million to £50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3,000,000	£1,800,000 – £7,500,000
B	£2,000,000	£1,200,000 – £5,000,000

Small organisation

Turnover £2 million to £10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800,000	£540,000 – £2,800,000
B	£540,000	£350,000 – £2,000,000

Micro organisation

Turnover up to £2 million

Offence category	Starting point	Category range
A	£450,000	£270,000 – £800,000
B	£300,000	£180,000 – £540,000